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황 동 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-25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0년 4월 일

발 의 자: 황동현, 경기문, 이충현, 김선경
신낙형, 강선영, 김동협, 김현희
이종숙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자유
총연맹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
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지원
근거 마련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(안 제1조)
- 나.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, 한국자유총연맹 회원,
한국자유총연맹 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.(안 제2조)
- 다.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.
(안 제3조)
- 라. 지원 신청 및 정산 절차에 대해 규정함.(안 제4조)
- 마. 표창 근거를 규정함.(안 제5조)
- 바.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.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3조

나. 협조부서: 자치행정과

다. 입법예고: 2020. 4. 14. ~ 2020. 4.19.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한국자유총연맹조직”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강서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단체(각 동주민센터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포함)를 말한다.
2. “한국자유총연맹 회원”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한국자유총연맹 사업”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 등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2.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3.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·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4.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
5.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)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

제5조(표창 등)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체적인 표창의 절차,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